



새 이민자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

캐나다 BC 주 거주 새 이민자를 위한

소득 안정 및 정부 서비스 안내

2014년 5월

수정 제3판 2013~2014

- 수정 및 개정: Miriam Jurigová, LLB, MOSAIC 법적 옹호 프로그램(Legal Advocacy Program)
- 법률 지원 및 검토: Shane Molyneaux, Shane Molyneaux Law Office, Alison Ward, 변호사, 지역 사회 법률 지원 협회

2008년 11월

- 초고: Scott McTaggart, 법대생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Pro Bono Law Students Program)
- 수정 및 개정: Miriam Jurigová, LLB, MOSAIC 법적 옹호 프로그램
-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Miriam Jurigová, LLB, MOSAIC 법적 옹호 프로그램
- 법률 지원 및 검토: Shane Molyneaux, Elgin, Cannon and Associates LLP; Ros Salvador와 Sarah Khan, 전속 변호사, BC 공익 옹호 센터(BC Public Interest Advocacy Centre) Alison Ward, 변호사, 지역 사회 법률 지원 협회

Miriam Jurigová, LLB는 이 대중 교육 자료 제작에 참여한 모든 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교정, 기술적 저술, 탁상 출판, 정착 서비스 등을 담당한 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캐나다 정부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자금 지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초판 간행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법률 재단(Law Foundation of British Columbia)의 자금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간행물의 상업용 복제는 불허하나 그 외 목적으로 출처를 명시한 복사는 권장합니다. 누구든지 정보가 필요한 분은 자유로이 복사하십시오.

차례

재정적 지원.....	2
월페어	2
고용 보험	8
일반 고용 보험 혜택	8
기타 특별한 고용 보험 혜택.....	10
노인의 소득 안정	11
캐나다 연금 플랜(CPP)	11
노령 보장 연금 (OAS) 프로그램	15
초청 이민자와 노령 보장 연금 프로그램.....	16
노인 보조금	17
월페어	17
노인 임차인 주거 보조(SAFER).....	18
취업	20
고용 기준.....	20
외국인 근로자	22
합법적인 취업 허가	23
WorkSafeBC(워크세이프비씨)	26
공공 의료 보험	29
의료 서비스 플랜(Medical Services Plan, MSP)	29
보험료 지원	31
임시 연방 보건 프로그램(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 IFHP).....	32
체류 자격	36
캐나다 시민권	36
영주 자격.....	36
보호	43
해외 난민.....	43
내국 난민.....	45
임시 거주자	48

교육	53
공립 학교(유치원~12학년)	53
BC 학생 보조(StudentAid BC)	54
세금	56
비과세 양육 보조금	58
보편적 육아 보조금	59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	59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67
지역 사회 기관	73

캐나다의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모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서비스에는 서로 다른 시민권 또는 거주 요건이 있으며, 일부 경우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민 신청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서는 주요 정부 서비스 및 체류 자격과 서비스 간 관련성에 관하여 일부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같은 정보는 법률상의 조언을 대체할 의도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움이 필요한 분은 유자격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문서의 끝 부분에 일부 소개처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현 시점의 법령이나 정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재정적 지원

웰페어

웰페어(welfare, 때로 공적 부조(social assistance) 또는 소득 보조(income assistance)라고도 함)는 BC 주 사회 개발 사회 혁신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Social Innovation)(이하 “사회개발혁신부”)가 주택, 식품, 의약품 같이 생활의 기본적인 것들도 누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돈 및/또는 기타 혜택입니다. 웰페어는 대개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파트타임 일거리만 찾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웰페어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 단위”(family unit)가 반드시 한 달에 특정 금액 미만을 벌어야 하며, 자산(돈과 소유물)의 가치도 특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회개발혁신부는 “가족 단위”에 본인(신청인), 배우자/파트너, 함께 사는 부양가족 자녀가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족 단위에 배우자/파트너와 자녀가 있는 경우 이들은 반드시 신청인과 함께 살고 있어야 하며 자녀/부양가족은 반드시 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BC 주에는 네 종류의 웰페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소득 보조. 웰페어를 받는 대부분 사람들이 받는 것.
- 생계 곤란 보조(hardship assistance). 소득 보조를 받을 수 없지만, 생활이 어렵고 다른 요건은 충족하는 사람들을 위한 임시 보조.
- 지속적인 복수의 취업 장벽이 있는 자(person with persistent multiple barriers)에 대한 혜택. 의료 증세가 있어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혜택. 수혜자는 반드시 소득 보조 및/또는 생계 곤란 보조를 최근 15개월 중 12개월 간 받았어야 자격이 있습니다.
- 장애인(person with disabilities) 혜택. 장애인과 그 가족 단위에 대한 혜택.

다음과 같은 경우 웰페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성인(만 19세 이상, 한정된 예외의 경우 있음)

- BC 주 거주자 그리고
- 웰페어를 받기 위한 시민권 요건을 충족하는 자. 즉, 본인(또는 가족 단위 내에서 사는 한 명의 성인 가족)은 반드시
 - 캐나다 시민이거나,
 - 영주권자(이민자)이거나
 - 협약 난민 또는 캐나다 이민 난민 보호법(Canada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에 의하여 보호가 필요한 자이거나
 - 임시 거주자 허가를 받아 캐나다에 체류 중이거나
 - 출국 명령을 받았으나 집행이 불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이 같은 웰페어 수혜 시민권 요건에는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캐나다에서 아무 체류 자격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웰페어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 최소한 한 자녀가 만 19세 미만이고, 대부분 함께 살며, 또한 캐나다 시민권자이다.
- 자녀와 같이 사는 부모는 학대하는 배우자를 떠나 따로 사는 것이다.
- 이 한 부모가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했고 또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이유로 자녀를 데리고 BC 주를 벗어날 수 없다.
 - 다른 BC 주민에게 자녀 양육권(양육권 또는 면접 교섭권이라고도 함)이 있거나, 법원 명령을 통하여 한 자녀 이상과 접촉(방문)할 권리가 있거나, 계약 또는 기타 합의가 있거나, 자녀를 데리고 사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BC 주를 떠나면 아마 명령이나, 계약, 기타 합의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BC 주의 다른 거주자가 해당 자녀에 대하여 자녀 양육권이나 접촉권을 주장하는 경우 또는
 - 본인이나 어느 한 자녀가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BC 주를 떠나면 환자의 신체 건강이 위험해지는 경우.

가족 단위에서 사는 배우자가 이 같은 시민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회개발혁신부는 그 배우자에게 웰페어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BC 주에서 임시 취업 허가를 받아 머무는 방문자, 학생, 근로자는 웰페어 수혜 자격이 없습니다.

웰페어를 받고 있는 사람은 연중 연속 31일 이상 BC 주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사전 허락 없이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재수혜 자격이 있지 않는 한 웰페어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회개발혁신부는 다음 이유라면 연속 31일 이상 BC 주 밖에 있어도 좋다고 허락하기도 합니다.

- 인정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
- 의사가 지시한 치료를 받는 경우 또는
- BC 주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당한 특수한 경우

초청 이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개인이나 부양가족이 캐나다에 초청 이민으로 온 경우, 초청자는 특정 연수(3년 또는 10년) 동안 피초청자를 후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초청 이민 후원 약정(sponsorship)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이 기간에 웰페어를 신청하는 피초청자는 초청자가 자신을 후원할 수 없거나 후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회개발혁신부에 반드시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예는 피초청자가 초청자에게 학대를 당한 경우입니다.

초청자가 학대하면 즉시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 문서의 끝에 소개된 곳들을 보시거나 피해자링크 BC(VictimLink BC)에 1-800-563-0808로 연락하십시오. 자신과 자녀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십시오.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면 즉시 9-1-1에 전화하십시오.

일자리 찾기

거의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일자리 찾기를 먼저 마쳐야 웰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BC 주에서 웰페어 혜택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 일자리 찾기는 5주간 지속됩니다.

전에 생계 곤란 혜택만 받은 적이 있는 사람도 일자리 찾기가 5주간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BC 주에서 웰페어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일자리 찾기는 3주간입니다.

웰페어를 받을 수 있기 전에 일자리 찾기를 마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학대하는 배우자 또는 그 외 학대하는 친척에게서 피신하는 자
- 한 명이라도 만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 사회개발혁신부가 믿기에 일자리 찾기가 힘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자
- 만 65세 이상인 자
- 가족 단위 구성원 중 최소한 한 명이 장애인(Person with Disabilities)인 경우 그리고
-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자(예: 난민 보호 지위를 구하는데 캐나다 취업 허가가 없는 자. 이에 해당하는 자는 난민 보호 신청에 필요한 증거 서류를 사회개발혁신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난민 보호를 근거로 일자리 찾기 규칙 면제를 신청하지만, 배우자는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면, 배우자가 반드시 일자리 찾기를 해야 합니다.

시급한 필요 평가

일자리 찾기(3주 또는 5주)를 반드시 해야 하는 자는 대개 일자리를 마칠 때까지 아무 웰페어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한 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일자리 찾기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식품이나 거처 또는 긴급 치료가 당장 필요한 사람의 경우

- 사회개발혁신부는 반드시 (웰페어 수혜 자격 여부를 알아보는) 자격 심사 면담 일정을 긴급히 잡아야 합니다.
- 사회개발혁신부는 이 사람이 자격 심사 면담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반드시 일부 도움(식품이 당장 필요하다면 식품 교환권 또는 거처가 당장 필요하다면 거처 소개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 자격 심사 면담 후, 이 사람은 일자리 찾기를 완수하는 동안 사회개발혁신부로부터 “생계 곤란 보조”라는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 계획

웰페어를 신청하고 받는 대부분 사람은 웰페어를 받는 동안 구직에 도움을 주는 취업 계획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일자리 찾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위 내용 참조) 취업 계획이 없어도 됩니다. 반드시 돌보아야 하는 장애가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와 사는 사람도 취업 계획이 없어도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이민 초청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웰페어를 받고 있는 사람은 가족의 캐나다 이민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잠재적 이민 초청자가 웰페어를 받고 있으면 이민관은 초청 이민 후원 약정 신청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예외: 다음 사람들은 웰페어를 받고 있어도 가족의 캐나다 이민을 여전히 초청할 수 있습니다.

- 1) 장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2)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 또는 배우자와의 재결합이 여전히 진행 중인 협약 난민 또는 보호 대상자.
 - i. 이민국(CIC)이 부양가족의 소재를 알고 있고
 - ii. 해당 협약 난민 또는 보호 대상자가 부양가족의 이름을 영주권 신청서에 기재한 경우
- 3) 다음의 경우 캐나다에 재정착한 해외 난민
 - i. 해당 재정착 난민이 부양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 ii. 해당 재정착 난민이 캐나다 도착 1년 안에 CIC의 ‘1년 내 신청 기회’(One Year Window of Opportunity) 규칙에 따라 배우자 또는 자녀와의 재결합을 신청하는 경우

이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 해당하면
유자격자에게 법적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거나 뒤에 나오는
지역 사회 기관 명부를 참조하십시오.

웰페어를 신청하면 안 되는 경우

협약 난민 또는 보호 대상자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웰페어를 신청하여 받으면 이민 신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합법적인 체류 자격 없이 캐나다에 살고 있거나 비자 또는 허가가 만료된 사람이 웰페어를 신청하면 사회개발혁신부는 그 사람의 체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출국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웰페어 신청 전, 특히 캐나다에서 적법한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유자격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웰페어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Your Welfare Rights: A Guide to BC Employment and Income Assistance”
(당신의 웰페어 권리: BC 주 취업 및 소득 보조 안내)를 보십시오:
resources.lss.bc.ca/pdfs/pubs/Your-Welfare-Rights-eng.pdf

소득 보조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eia.gov.bc.ca/bcea.htm을 보십시오.

고용 보험

일반 고용 보험 혜택

고용 보험(employment insurance, EI)은 실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돈을 주는 연방 프로그램입니다.



EI를 받으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실직 전 52주 동안 특정 시간 수 이상 일한 적이 있어야 하고
- 일할 수 있으며, 일하고자 하고,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며
-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EI를 받는 동안 반드시 캐나다에 있어야 합니다.

EI 수령을 위한 정식 거주 요건이나 시민권 요건은 없지만, 실직 전 반드시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유효한 취업 허가를 받아 일하고 있었어야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BC 주에서(BC 주 북부 일부 지역 제외) 의무 근로 시간 수는 약 700시간입니다(이 수치는 세월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며,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EI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전 고용주에게서 고용 기록을 받아 실직 전 52주간 의무 근로 시간 수를 일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증명하여야 합니다.

고용주가 고용 기록을 주지 않았어도 급여 명세서를 소득 및 근로 시간의 증거로 사용하여 EI를 즉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EI 부담금이 종업원의 급여 수표에서 공제되는 직업은 EI 수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일부 경우(예를 들어, 직원이 아닌 계약직으로 고용된 경우)의 근로 시간은 EI 수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2년 미만 일한 사람은 “노동력 신규 전입자”(즉, 52주 기간 전 해당 연도에 490시간 미만 일한 자)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 전입자는 반드시 실직 전 52주 동안 910시간을 일했어야 EI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 자격이 있으면, 티는 실직 전 임금에 대하여 기본 요율 55%(에서 최대 주당 \$514까지)가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특정 수의 주 동안 또는 수령인이 새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집에 만 18세 미만 자녀가 한 명 이상 있고 가족 순소득이 연간 \$25,921 미만인 사람은 티 가족 보조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티 가족 보조금을 받으면 실직 전 임금의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티를 받을 수 있는 주의 수는 지난 52주 동안 일한 시간 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현재 BC 주에서(BC 주 북부 일부 지역 제외) 이 수는 14~45주입니다.

실직 후 2주는 티 혜택이 지급되지 않는 대기 기간입니다. 그래도 실직 후 가능하면 빨리 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티 청구가 처리되기까지 최대 4주 또는 심지어 6주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기 기간 중 소득 부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사람은 생계 곤란 보조라는 일종의 웰페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6페이지 참조).

티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servicecanada.gc.ca

1-800-206-7218로 연락하면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지난 취업 허가

고용주가 지정된 취업 허가나 자유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 임시 근로자는 캐나다에서 일하는 동안 세금을 내고 고용주와 함께 티 부담금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 캐나다 내 취업 허가가 유효하지 않아 실업자가 되었고 새 취업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경우 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일할 수 있으며, 일하고자 하고,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 새 취업 허가를 받는다고 증명할 수 있다(즉, 취업 허가를 신청했으며 자신이 어쩔 수 없는 행정 처리 지연만이 유효한 취업 허가 발급 절차의 걸림돌이다).

이런 경우는 대개 티 위원회가 최초 심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므로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은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거나, 사회 보장 재판소(Social Security Tribunal)에 이의를 신청하여 새 취업 허가를 받을 예정이거나 이의 신청 시점까지는 받을 것이라는 증거를 더

제출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유자격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기타 특별한 고용 보험 혜택

근로 시간 수가 충분하여 자격이 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별 EI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가족이 중병을 앓아 일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질병 급여
- 질병으로 EI를 받으려는 신청인은 아파서 일할 수 없으며 검사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진단서를 의사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질병으로 EI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5주이며, 임신도 15주입니다. 신생아(또는 부모) 돌보기는 35주입니다.
- 가족이 중병을 앓고 있으며 26주 안에 사망할 “상당한 위험”이 있는 사람은 EI로부터 6주간 간병 급여를 받아 친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 가까운 친척을 돌보러 캐나다를 떠나야 하는 사람도 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주의: 누구든지 위와 같은 상황 중 어느 경우든지 EI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여전히 근로 시간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요건은 EI의 일반 근로 시간 요건과 다릅니다.

EI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servicecanada.gc.ca/eng/ei/publications/process.shtml

노인의 소득 안정

캐나다는 노인에게 여러 종류의 소득 안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3대 프로그램은 캐나다 연금 플랜(Canada Pension Plan, CPP), 노령 보장 연금(Old Age Security, OAS), 소득 보장 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입니다. 이 세 프로그램을 모두 관장하는 부서는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입니다.



노인 소득 안정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servicecanada.gc.ca/eng/audiences/seniors/index.shtml

노인을 위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www.canadabenefits.gc.ca/f.1.2cl.3st@.jsp?geo=1&catid=11&searchallcats=52,53

캐나다 연금 플랜(CPP)

CPP는 캐나다 전역에서 통용됩니다. 퀘벡 주는 그 주의 근로자들을 위한 퀘벡 연금 플랜(Quebec Pension Plan, QPP)이라는 자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플랜은 서로 협력하여 모든 가입자가 어디에 살든 보호되게 하고 있습니다.

CPP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 기간 중 CPP 프로그램에 보험료를 냈어야 합니다. CPP는 장애인이 되거나 은퇴하는 사람에게 기본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다 수혜자가 사망하면 CPP는 생존 배우자/파트너와 자녀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CPP 급여는 세 가지입니다.

1. 퇴직 연금
2. 장애 급여(장애인 가입자와 그 부양가족 자녀 대상) 및
3. 생존자 급여(사망 보험금, 생존자 연금, 자녀 급여 포함)

CPP 퇴직 연금

CPP에 최소한 **한 번의 유효한 부담금**(납부금)을 낸 사람은 CPP 퇴직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CPP 연금을 전액 받으려면 반드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60세에서 64세 사이부터도 받기 시작할 수 있으나 금액은 줄어듭니다. 매월 CPP 퇴직 연금 수령액은 수혜자가 일하는 동안 CPP에 낸 부담금의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CPP 퇴직 연금은 지급이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퇴직 연금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CPP 장애 급여를 이미 받다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장애 급여는 퇴직 연금으로 자동 변경(전환)됩니다.

CPP 퇴직 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servicecanada.gc.ca/eng/services/pensions/cpp/retirement/index.shtml

CPP 장애 급여

중증 신체 장애나 정신 장애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은 CPP 장애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일하는 동안 CPP에 낸 부담금의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장애 급여를 받으면 자녀도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CPP 장애 급여를 받으려면

- 신청인은 반드시 만 65세 미만이어야 하며
- 마지막으로 일한 시점의 특정 시한 내에 장애인이 되었고 CPP에 부담금을 냈어야 합니다.

장애 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servicecanada.gc.ca/eng/services/pensions/cpp/disability/index.shtml

CLEO 간행물 “CPP Disability Pensions”(CPP 장애 연금)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www.cleo.on.ca/en/publications/cppdisability

CPP 생존자 급여

생존자 급여는 CPP에 부담금을 낸 사람이 사망한 후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생존자 급여는 네 종류이며, 수혜 자격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A) 생존자 보조금

CPP 생존자 보조금은 사망한 CPP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로서 만 60~64세인 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월정액입니다. 생존자 보조금의 2014년 월 최대 지급액은 \$1,172.65입니다. 받을 수 있는 실제 금액은 고인이 CPP에 낸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생존자에게 수혜 자격이 있으려면 반드시

- 저소득자(2014년의 경우 \$22,512 미만)이고
- 캐나다에 거주하며
-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인 거주자이어야 하고
- 만 18세 이후 캐나다에서 최소한 10년간 살았어야 하며
- 독신자(재혼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B) 생존자 연금

CPP 생존자 연금은 사망한 CPP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에게 지급될 수 있는 월정액입니다. 생존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받을 금액과 시기는 다음에 따라 다릅니다.

- 고인이 CPP에 낸 부담금 금액과 납부 기간
- CPP 가입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나이
- 생존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장애인 여부 또는 고인과의 사이에서 난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여부

생존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만 65세가 되기 전이나 장애인이 되기 전 생존자 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최소한 만 35세 또는
- 만 35세 미만이고 장애가 있거나 부양가족 자녀를 키움

C) 사망 보험금

CPP 사망 보험금은 장례 비용에 도움을 줄 의도로 지급되는 1회 금액입니다. 2014년도 사망 보험금 최대 한도액은 \$2,500입니다. 받을 수 있는 실제 금액은 고인이 CPP에 낸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사망 보험금을 받으려면, 고인 가입자가 반드시 최소한 3년간, 대개는 그보다 더 긴 기간 CPP에 부담금을 냈어야 합니다. 사망 보험금은 대개 CPP 가입자의 유산에 또는 장례 비용을 부담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D) 자녀 급여

CPP 자녀 급여는 CPP 장애 급여를 받는 자 또는 CPP에 부담금을 충분히 내고 사망한 자의 부양가족 자녀에게 지급될 수 있는 월정액입니다. 자녀는 생물학적 자녀이거나 양자 또는 양녀 혹은 해당 장애인 가입자나 고인 가입자의 보호와 양육을 받았던 자녀이면 됩니다.

자녀의 수혜 자격은 반드시 만 18세 미만이거나 인정된 학교 또는 대학의 만 18~25세 풀타임 학생이어야 합니다.

2014년도 자녀 급여 최대 지급액은 월 \$230.72입니다.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실제 금액은 부모가 CPP에 낸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생존자 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servicecanada.gc.ca/eng/services/pensions/after-death.shtml

국제적인 혜택

캐나다의 캐나다 밖에서 일하고 산 사람들을 위하여 다수의 국가와 협정을 맺었습니다. 해당인이 일한 타국과 캐나다 간에 그런 협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람은 **캐나다 및/또는**

타국으로부터 연금이나 급부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협정을 통하여, 해당인이 타국에서 납부한 부담금은 CPP 부담금과 합산하여 최소 수혜 자격 기준을 충족하게 하기도 합니다. 협정 대상국 중 하나에서 수혜 자격이 있을 만큼 살거나 일하지 않은 사람은 타국에서 보낸 시간을 합산하여 급부금 수령 거주 요건을 충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servicecanada.gc.ca/eng/services/pensions/international/index.shtml

노령 보장 연금 (OAS) 프로그램

노령 보장 연금 프로그램(Old Age Security Program)은 대부분 캐나다 노인에게 노후 소득을 제공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급부금은 노령 보장 연금(OAS), 소득 보장 보조금(GIS), 수당(Allowance) 등입니다.

노령 보장 연금(OAS)

OAS는 만 65세 이상의 대부분 캐나다인이 받을 수 있는 월정액입니다. OAS를 전액 수령하려면 만 18세 이후 캐나다에서 반드시 최소한 40년간 살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전액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만 18세 이후 캐나다에서 최소한 10년간 살았다면 OAS 부분 수혜 자격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 경력은 OAS 수혜 자격의 요인이 아닙니다. OAS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득 보장 보조금(GIS)

GIS는 캐나다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OAS에 더하여 지급하는 돈입니다. GIS를 받으려면 신청인은 반드시 OAS를 받고 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GIS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OAS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GIS 수령 금액은 신청인의 연간 소득 또는 신청인과 배우자/파트너의 합산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 소득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반드시 GIS를 매년 갱신하여야

합니다. 소득을 4월 30일 전에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 신고하면 재신청 양식을 우편으로 받습니다.

수당 및 생존 배우자 수당

수당과 생존 배우자 수당은 둘 다 만 60~64세인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월정액입니다. 수당은 OAS를 받고(즉, 만 65세 이상이고) GIS 수혜 자격이 있는 저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에게 지급됩니다. 해당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수혜 자격은 반드시 캐나다의 합법적인 거주자이거나 시민권자이어야 하고, 만 18세 이후 캐나다에서 최소한 10년간 살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두 사람의 합산 연간 소득(OAS 연금액 불포함)은 반드시 특정 금액(예: 2014년 1월에 이 금액은 연간 \$30,912였음) 미만이어야 합니다. 2014년 1월 현재, 수당의 월 최대 지급액은 \$1,047.43입니다. 수당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생존 배우자 수당은 만 60~64세인 자로서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가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수혜 대상자는 반드시 독신자(재혼하지 않았거나 사실혼 파트너와 동거하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캐나다의 합법적인 거주자이거나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만 18세 생일 이후 캐나다에서 반드시 최소한 10년간 살아야 하며, 연간 소득이 반드시 특정 금액(예: 2014년 1월에 이 금액은 연간 \$22,512였음) 미만이어야 합니다. 2014년 1월 현재, 생존 배우자 수당의 월 최대 지급액은 \$1,172.65입니다.

수당과 생존 배우자 수당은 둘 다 수혜자가 만 65세가 되어 OAS 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수혜자는 반드시 매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수당과 생존 배우자 수당은 소득세상의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수당과 생존 배우자 수당은 수혜자가 캐나다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든 6개월 이상 캐나다 밖에 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초청 이민자와 노령 보장 연금 프로그램

초청 이민자는 만 18세 생일 이후 캐나다에서 10년 이상 살지 않은 한 초청 이민 후원 약정 기간 중에는 GIS나 수당, 생존 배우자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청 이민자는 OAS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초청 이민 후원 약정 기간 중에도 OAS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초청 이민자는 초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초청 이민 후원 약정 기간 중이라도 GIS나 수당, 생존 배우자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파산을 선언하거나
- 6개월 이상 수감되거나
- 초청 이민자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 사망함

OAS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servicecanada.gc.ca/eng/services/pensions/oas/index.shtml

노인 보조금

노인 보조금은 사회 개발 사회 혁신부가 연방 연금 또는 기타 근로 소득의 합계 소득이 주 정부 보장 수준에 못 미치는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주 정부 월정 금액입니다. 이 보조금은 OAS와 GIS를 받는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지급됩니다(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자세한 신청 방법은 www.eia.gov.bc.ca/factsheets/2005/seniors_supp.htm에 나와 있습니다.

웰페어

연방 혜택 수혜 자격이 없는 노인은 주 정부 웰페어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혜택과 자격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법률 서비스 협회(Legal Services Society) 간행물 *Your Welfare Rights(당신의 웰페어 권리)*: www.lss.bc.ca/publications/pub.php?pub=167 및
- BC 시민 법률 학교(People's Law School) 간행물 *"When I'm 64: Benefits"(내가 만 64세가 될 때: 혜택)*: www.publiclegaled.bc.ca

노인 임차인 주거 보조(SAFER)

노인 임차인 주거 보조(Shelter Aid for Elderly Renters, SAFER)는 BC 주 저소득~중간 소득 계층 노인들의 월세 비용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SAFER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SAFER 신청 직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최소한 12개월간 살았어야 합니다.
- 임대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 보조 주택 거주자나 공공 주거형 보호 시설 거주자 또는 자신이 거주하는 조합 주택의 지분을 소유한 사람은 수혜 자격이 없습니다.
-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함께 사는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도 반드시 체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월간 (세금 전) 가구 총 소득의 30% **이상**을 임차료로 내고 있어야 합니다. 조립식 주택(트레일러)을 소유하여 사는 사람이 부담하는 대지 임차료는 임차료에 포함됩니다.
- 사회개발혁신부로부터 “의료 서비스에 한하는” 혜택 이외의 웰페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체류 자격 요건

SAFER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 시 반드시 BC 주 정착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초청 이민자로서 초청 이민 후원 약정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은 (후원 약정이 깨지지 않은 한) SAFER 수혜 자격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본인과 동거인은 반드시

- 캐나다 시민이거나,
- 캐나다에 정착 거주하려고 합법적으로 입국한 자이거나
- 난민 지위 신청자이거나
- 초청 이민자였으나 초청 이민 후원 약정이 깨진 자이어야 합니다.

노인과 관련한 의문 및 우려 사항은 BC 노인 옹호 지원 센터(BC Centre for Elder Advocacy and Support, BCCEAS)의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bcceas.ca

BCCEAS의 노인 학대 정보 전화(Seniors Abuse and Information Line)

전화: 604 437 1940 또는 1-866-437-1940 (무료 전화)

취업

고용 기준

BC 주 고용 기준국(Employment Standards Branch, ESB)은 종업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며 수혜 자격이 있는 모든 혜택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합니다. BC 고용



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다음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주의: 이 규칙 중 다수는 농장 근로자와 입주 돌보미에게 다르게 적용됩니다. 농장 근로자와 가사 도우미 관련 연락처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 시간당 \$10.25의 최저 임금(주류 봉사원 최저 임금은 시간당 \$9)
- 월 2회 임금 지급
- 연속 근무 5시간마다 30분의 무급 식사 시간
- 정규 임금 외 하루 8시간 초과 근무 시간당 정규 임금의 1.5배 및 하루 12시간 초과 근무 시간당 정규 임금의 2배 지급
- 1년 근무 후 연간 2주의 유급 휴가 그리고
- 3개월 고용 후 이유 없이 고용을 해지하는 경우(종업원 과실이 아닌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퇴직금을 주거나 사전 해고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의무 퇴직금 금액이나 통지 기간은 고용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권리 중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labour.gov.bc.ca/esb를 보시거나 고용 기준국(ESB) 안내 전화 1-800-663-3316으로 문의하십시오. ESB 사무소 위치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www.labour.gov.bc.ca/esb/contact/welcome.htm

시민 법률 학교(People's Law School)의 유용한 자료 "Working in BC: Your Leg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BC 주에서 일하기: 당신의 법적 권리와 의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www.publiclegaled.bc.ca/working-in-bc/

고용주가 의무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ESB 자력 해결 키트(Self-Help Kit)는 근로자가 고용주와 문제를 상의하고 고용주에게 법적 의무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키트는 www.labour.gov.bc.ca/esb/self-help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로자는 ESB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력 해결 키트 사용은 불만 제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불만 제기는 문제 발행 후 또는 고용 해지 후 최대 6개월 안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6개월 기간이 끝나고 나서 30일 안에 ESB에 불만을 먼저 제기하고 나서 자력 구제 키트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력 해결 키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자가 만 19세 미만이다.
- 불만이 출산 휴가나 육아 휴가, 가족 부양 휴가, 유족 휴가, 배심원 의무에 관한 것이다.
- 직장이 폐쇄됐거나, 임대인 또는 집행관이 출입문을 잠갔거나, 해당 근로자가 자산 반출을 우려한다.
- 해당 근로자가 농장, 섬유, 의복 계통 근로자이거나 입주 돌보미이다.
- 해당 근로자에게 상당한 언어 능력이나 이해력이 있다.
- 해당 근로자가 법에 따라 문제와 분쟁을 적시하고 해결을 요청하는 편지를 고용주에게 이미 보냈다. 또는
- 유일한 문제가 마지막 급여 수표를 아직 받지 못한 것이다.

불만 사항을 다음 웹사이트에서 ESB에 온라인으로 제기하십시오.

www.labour.gov.bc.ca/esb/facshts/complaint.htm

또는 거주지 ESB 사무소를 방문하십시오.

불만이 제기되면, ESB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과 혜택을 제공했는지 판단합니다. 고용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손실 임금이나 기타 혜택을 보상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BC 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고용 기준법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초과 근무 수당, 법정 공휴일과 휴일 수당, 연차 휴가와 휴가 수당, 최저 임금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임금 대신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구직 시 도움을 받을 때 또는 유망 직업과 관련한 정보를 구할 때 요금을 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다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취업을 조건으로 이민을 돕는 대가
- 근무 기간이나 고용 계약 완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의 벌금 또는
-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를 소개한 취업 알선 기관이나 개인에게 지급한 비용 환불

고용주는 법이 정한 대로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예: 소득세, CPP, EI 보험료, 노동조합비).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사업 비용의 일부 부담을 요구할 수 없지만, 근로자가 서면으로 허락하면 임금에서 가불금과 초과 지급금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나 취업 알선 기관은 취업 허가가 완료되기 전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근로자가 다른 고용주에게서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근로자에게 출신국으로 돌아가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연방 정부만 합법적으로 캐나다에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언어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기준에 관한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자력 해결 키트를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장 근로자와 입주 돌보미에게 적용되는 특정 고용 기준 규칙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labour.gov.bc.ca/esb/domestics/

www.labour.gov.bc.ca/esb/agriculture

농장 근로자와 가사 도우미는 다음 기관들에 연락하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West Coast Domestic
Workers Association
302-119 West Pender Street
Vancouver, B.C. V6B 1S5
604-669-4482 또는 무료 전화 1 888 669 4482
www.wcdwa.ca

PICS Agricultural Workers
Legal Advocacy Program
205-12725 80th Avenue
Surrey, B.C. V3W 3A6
604-596-7722
<http://pics.bc.ca/legal-advocacy-program/>

합법적인 취업 허가

합법적인 취업 허가 없이 일한다고 해서 고용 기준국을 통하여 고용주에게 돈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체류 자격 결여에 비추어 다루어야 하고 따져보아야 할 위험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특히 BC 주에서 취업 허가 없이 일할 때는 착취당할 위험이 있으며, 달리 이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체류 자격 없이 또는 비밀리에 일하는 사람은 사회 보험 번호(SIN) 없이 일하므로 근로자 재해 보상과 고용 보험(EI) 등 적법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이 누리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적법한 자격이 없는 근로자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도 없으므로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체류 자격 없이 일하는 근로자는 법에 저촉되어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는 경우 캐나다 당국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적법한 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떤 선택권이 있을까요? 적법한 자격 없이 일한다고 해서 체류 임금에 대하여 고용 기준국(ESB)에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위 내용 참조). 실제로, 구제 수단을 구하려고 ESB에 호소하는 것이 이용 가능한 합법적인 유일한 방안일 수도 있습니다. ESB에 불만을 제기하면 엄격히 비밀로 다루고 개인 정보로 보호됩니다. 불만 제기 관련 당사자들 외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ESB는 모든 불만 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불만 처리 절차를 통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labour.gov.bc.ca/esb/facshts/complaint_resolution.htm

ESB에 불만을 제기하는 데 따르는 위험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불만 처리 절차가 비공개로 비밀리에 진행된다고 해도 체류 자격이 결여된 자에게는 그와 연관된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고용주에게서 옵니다. 고용주가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anadian Border Services Agency, 이하 "CBSA")에 해당 근로자가 캐나다에 "불법" 체류하고 있다고 신고하여 체납 임금 지급을 회피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비슷한 상황들에서는 종업원이 캐나다에서 빈손으로 추방되느냐 아니면 임금을 받고 추방되느냐 하는 경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명백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여전히 ESB에 불만을 제기하여 돈도 받지 못한 채 캐나다를 떠나야 할 일부 가능성을 감수할 것인지 반드시 결정하여야 합니다.

CBSA에 체류 자격 결여자가 신고되면, 무자격 체류 근로자에 대한 이민국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국 명령(removal order): 출국 명령이 내려지면 캐나다를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인에게는 출국 이유를 알리고 명령서 사본을 줍니다. 부양가족으로서 역시 체류 자격이 없는 캐나다 내 가족은 캐나다 시민권자나 만 19세 이상 영주권자가 아니면 출국 명령에 함께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적용되는 출국 명령은 두 종류입니다.

자진 출국 명령(departure order): 해당인은 명령이 발효된 후 **30일** 안에 반드시 캐나다에서 떠나야 하고, CBSA가 출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자진 출국 증명서(certificate of departure)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캐나다에 제약 없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해당인이 30일 안에**

떠나지 않거나 자진 출국을 CBSA에 확인해 주지 않으면 자진 출국 명령은 자동으로 추방 명령(deportation order)이 됩니다.

입국 금지 명령(exclusion order): 해당인은 만 1년간 캐나다에 다시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일찍 다시 오려면 CIC로부터 허가를 받으려 노력하여도 됩니다.

이 중 어느 출국 명령을 받은 캐나다 출입국 기록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어떤 구제 수단을 구하든, 해당인은 장차 캐나다 입국이 금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CIC 비자 발급관에게 입국 비자를 거부할 전적인 재량권이 있고/있거나 국경 관리들이 입국장에서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임시 근로자로서 또는 적절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로서 자신의 권리에 관하여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은 아래 단체에서 상담하십시오(농장 근로자와 가사 도우미의 경우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관을 참조하십시오).

MOSAIC 법적 옹호 프로그램(Legal Advocacy Program)

**1720 Grant Street, 2nd floor
Vancouver, B.C. V5L 2Y7**

전화: 604-254-9626 팩스: 604-629-0061

www.mosaicbc.com/settlement-services/general-support/legal-advocacy

노동조합

직업과 근무지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거나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고용주를 대할 때 피고용인들을 대리하는 조직입니다. 노조는 모든 노조원에게 적용되는 근로 조건과 기준을 고용주와 협상합니다. 이는 단체 협상에 의한 협약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든 경우, 협상된 조건과 기준은 고용 기준법이 요구하는 조건 및 기준과 같거나 더 낫습니다. 피고용인, 노조, 고용주는 단체 협약에 명시된 조건을 적법하게 따라야 합니다. 관련법은 고용 기준법과 달리 노사관계법(Labour Relations Code)에 의하여 제정됩니다.

단체 협약은 각기 크게 다르므로 피고용인이자 노조원으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 협약에 명시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믿는 근로자는 노조

대표자에게 연락하여 “고충”으로 알려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충 제기 및 처리 방법은 다양하지만, 모든 노조는 고충을 적법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해당 문제에 대하여 정직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고용주가 단체 협약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면 노조는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해결책을 협상합니다.

주의: 노조에 속한 근로자는 고용주와 문제가 생기면 ESB보다는 노조 대표자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WorkSafeBC(워크세이프비씨)

근로자 재해 보상

BC 주에서 근로자 재해 보상법(*Workers' Compensation Act*)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과 관련한 종업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보상금을 규제합니다. WorkSafeBC는 BC 주에서 프로그램을 관장합니다.

청구 프로그램과 방법에 관한 내용은 www.worksafebc.com/claims를 보십시오.

WorkSafeBC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근로자가 반드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어야 하며, 부상이나 질병의 원인이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BC 주에서 일하는 대부분 사람은 상근직, 시간직, 계약직, 일용직 여부와 관계없이 WorkSafeBC의 보상 대상입니다. 고용주가 WorkSafeBC에 등록하지 않았어도 근로자는 보상을 받습니다.

WorkSafeBC
www.worksafebc.com

콜센터: 604-231-8888(메트로 밴쿠버)
1-888-967-5377(BC 주 내)

WorkSafeBC 지역 사무소는 코트니(Courtenay), 나나이모(Nanaimo), 빅토리아(Victoria), 애보츠포드(Abbotsford), 버나비(Burnaby), 코퀴틀람(Coquitlam), 노스 밴쿠버(North

Vancouver), 씨리(Surrey), 밴쿠버(Vancouver), 캠룹스(Kamloops), 컬로나(Kelowna), 넬슨(Nelson), 포트 세인트 존(Fort St. John), 프린스 조지(Prince George), 테라스(Terrace) 등에 있습니다. 위치와 연락처는 www.worksafebc.com/contact_us/default.asp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WorkSafeBC 보상 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worksafebc.com/publications/how_to_work_with_the_wcb/Assets/PDF/CM025.pdf

근로자를 위한 WorkSafeBC의 기타 간행물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www.worksafebc.com/publications/how_to_work_with_the_wcb/default.asp#workers

재해 예방 정보의 전화(Prevention Information Line)는 보건과 안전 규정, 근로자와 고용주의 책임 등에 관한 직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사고나 사건 보고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재해 예방 정보의 전화(WorkSafeBC)

로어 메인랜드: 604-276-3100

BC 주: 1-888-621-7233

근무 시간 이후: 604-273-7711 또는 1-866-922-4357

www.worksafebc.com/contact_us/prevention_information_line

부상 보고

일하다 다치는 사람은 부상을 반드시 고용주에게 즉시 보고하고 WorkSafeBC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의사의 진찰도 바로 받아야 하며, 의사에게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을 WorkSafeBC에 보고하지 말라고 하거나 근로자가 WorkSafeBC에 보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자 상담원

근로자 상담원은 BC 주 근로자 재해 보상 이용에 문제가 있는 근로자들을 돕습니다. 이들은 WorkSafeBC 직원이 아니며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근로자 상담원 사무소(Workers Advisors Office)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labour.gov.bc.ca/wab

공공 의료 보험

의료 서비스 플랜(Medical Services Plan, MSP)

캐나다에서 보건 및 의료 서비스는 공공 건강 보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됩니다. 주마다 별도의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C 주에서는 보건 및 의료 서비스 보험이 BC 건강 보험 공단(Health Insurance BC)을 통하여 제공됩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MSP에 등록하고 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전년도 소득이 특정 금액보다 낮으면 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BC 주에 새로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BC 건강 보험 공단에 신청하여야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BC 주 새 거주자 또는 재정착자는 대개 도착한 달의 남은 날수에 두 달을 더한 대기 기간을 거치고 나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BC 주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특정 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이는 캐나다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자라는 뜻입니다.
- BC 주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 연중 6개월간 BC 주에 실제 있어야 합니다.

주의: 건강 보험 신청 전 6개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두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등록되면 6개월 거주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도 여전히 건강 보험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다른 두 규칙을 충족하고 다음 중 어느 한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류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6개월 이상 유효한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가 있거나 그런 비자가 있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했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음(신청 처리 절차가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에서 반드시 진행 중이어야 함)
-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입양 중인 자녀 또는
- 영주권을 신청했고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 장관이 의료상 입국 불허를 이유로 임시 거주자 허가(Temporary Resident Permit)라는 허가증을 발급하였음 이 상황에서는 임시 거주자 허가 소지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도 체류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범주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유자격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추진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경우, 연중 6개월간 BC 주에서 살면 건강 보험이 유지됩니다. 소수의 경우, BC 주 밖에서 6개월 이상 있어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BC 주 외부 학교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로 가기 전 BC 주에서 반드시 연중 6개월간 살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살면 보험이 유지됩니다. 풀타임 학업을 중단하고 BC 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풀타임 학생 신분을 잃고 나서 1개월 후에 보험 수혜 자격을 상실합니다. 일이나 휴가를 이유로 연중 6개월 이상 BC 주를 떠나 있는 사람은 최대 24개월까지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 떠나기 전 주 정부의 승인
- 다른 주나 나라의 거주자가 되지 않음 그리고
- 출발 전 12개월 중 6개월간 캐나다에서 거주

주의: 특정 기간 안에 “유자격으로 간주”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BC 주 밖으로 나갈 때마다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전 승인된 기간보다 더 오래 캐나다를 떠나 있으면 돌아온 후 대기 기간을 채워야 다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질문에 대한 답은 MSP에 직접 연락하여 들으십시오.

연락처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www.health.gov.bc.ca/msp/infoben/contacts.html

달력상으로 한 해에 6개월 이상을 BC 주 밖으로 정기 여행하여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다음과 같은 경우 여전히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주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 BC 주 이외의 곳에서 거주자로 정착하지 않습니다.
- BC 주를 직업의 본거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 월 1회 또는 BC 주에 여전히 거주한다고 주 정부가 믿을 만큼 충분히 BC 주에서 지냅니다.

보험료 지원

BC 주는 건강 보험 월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보험료 지원 프로그램(Premium Assistance Program)은 캐나다에 이전 12개월간 살았고 그 기간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였던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 난민으로 인정되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캐나다에서 지내는 최초 12개월간 또는 직업을 가질 때까지 둘 중 먼저 오는 기간 중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웰페어(위 내용 참조)를 받는 사람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BC 주를 완전히 떠났다고 주 정부가 믿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보험을 상실합니다.

- 캐나다 밖으로 이주하는 경우 BC 주를 떠난 달의 말일 또는
- 캐나다 안에서 이주하는 경우 BC 주를 떠난 달의 말일이 지나고 나서 2개월 후

BC 건강 보험 공단(Health Insurance BC)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health.gov.bc.ca/msp

임시 연방 보건 프로그램(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 IFHP)

이것은 주 정부 MSP 보험 수혜 자격이 아직 없는 다음 사람들을 위한 임시 보건 혜택 프로그램입니다.

- 보호 대상자(재정착 난민 포함)
- 난민 신청자 및
- 기타 특정 단체

IFHP는 민영 보험 플랜으로 청구할 수도 있는 서비스나 상품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혜택

IFHP는 세 가지 기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의료 혜택
- 확대 의료 혜택 및
- 공중 보건 또는 공공 안전 의료 혜택

의료 혜택

이 혜택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다음 사람들을 포함하여 재정착 지원 프로그램(Resettlement Assistance Program, RAP)으로 소득 지원을 받지 않고 있고 MSP 수혜 자격이 아직 없는 보호 대상자
 - 대부분의 개인 후원 난민(Privately-Sponsored Refugee, PSR)
 - 협약 난민(Convention Refugee)으로 인정된 난민 및

- 추방 전 위험 요소 심사(Pre-Removal Risk Assessment, PRRA)에서 긍정적인 결정을 받은 대부분 개인
- 지정 출신국(DCO) 출신이 아닌 난민 신청자 및
- 2012년 12월 15일 전에 신청한 DCO 출신 난민 신청자

IFHP로 의료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고 질병이나 증상, 질환, 부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다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 서비스
- 의사나 간호사의 서비스
- 검사실, 진단, 구급차 서비스 및
- **공중 보건에 위험이 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또는 공공 안전이 우려되는 증세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는** 약물과 백신

MSP 또는 타주의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사람은 IFHP 수혜 자격이 더는 없습니다.

확대 의료 혜택

이 혜택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다음 사람들을 포함하여 재정착 지원 프로그램(RAP) 또는 그에 상응하는 퀘벡 주 프로그램으로 소득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사람들
 - 정부 지원 난민(Government-assisted refugee) 및
 - 공동 지원 후원 프로그램 난민(Joint Assistance Sponsorship Program Refugee)
- 다음 사람들을 포함하여 RAP로 소득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사람들
 - 정부와 민간 후원자가 공동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혼합 재정 지원 대상자의 일부로 지명된 비자 사무소 의뢰 난민(Visa Office-Referred Refugee)
 - 공공 정책 또는 장관이 주도한 인도주의와 온정주의적 배려의 결과 캐나다에 재정착하는 특정인

- 관할 부서와 비용 분담 계약을 체결한 단체가 후원하는 특정 난민
- 이민 난민 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제24조 (3)항에 따라 유효한 임시 거주자 허가를 소지한 인신매매 피해자

IFHP로 확대 의료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고 질병이나 증상, 질환, 부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다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 서비스
- 의사나 간호사의 서비스 및
- 검사실, 진단, 구급차 서비스

이외에도, 여전히 RAP의 지원이나 민간 후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다음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처방약과 기타 약국 제품
- 제한된 치과 및 안과 진료
- 거동을 돕는 보형물과 기기
- 가정 간호 및 장기 요양 서비스
- 공인 임상 심리사가 제공하는 심리 상담 및
- 도착 후 건강 평가

공중 보건 또는 공공 안전 의료 혜택

이 혜택은 거부된 난민 신청자 및 다음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2012년 12월 15일 이후 난민 신청을 한 지정 출신국 출신 난민 신청자

IFHP로 공중 보건 또는 공공 안전 의료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공중 보건에 위험이 되는 질병이나 공공 안전이 우려되는 증세의 진단, 예방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음 서비스에만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 의사나 간호사의 서비스

- 검사실과 진단 서비스 및
- 약물과 백신

이민 신체검사

IFHP는 모든 난민 신청자의 청구가 처리되는 동안 이민 신체검사 비용도 부담합니다.

서비스 요약은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cic.gc.ca/english/refugees/outside/summary-ifhp.asp

체류 자격

캐나다 시민권

캐나다 시민은 **캐나다 권리 자유 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 보장된 모든 권리와 자유, 보호를 누립니다. 캐나다 시민에게는 캐나다 여권을 가질 권리와 얼마나 오래 캐나다 밖에 나가 있었든 재입국할 권리가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은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허위 진술로 취득하지 않은 한 어떤 이유로도 캐나다에서 떠나라고 강요당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 관련 규칙은 **시민권법(Citizenship Act)**에 나와 있습니다.

영주 자격

영주권자

영주권자는 캐나다에서 영구 거주할 권리가 부여된 이민자, 난민, 보호 대상자를 말합니다. 영주권자에게는 캐나다 방문자보다 더 많은 권리가 있지만, 캐나다 시민권자에게 있는 권리가 다 있지는 않습니다(예: 영주권자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영주 자격에 관한 규칙은 **이민 난민 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에 나와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권리

영주권자에게는 캐나다에 들어와 살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권리 자유 헌장**(대개 **헌장**이라 함)에 명시된 **대부분** 권리도 있습니다. 이런 권리에는 종교의 자유와 법적 권리가 포함됩니다.

영주권자의 권리로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의료 혜택을 비롯한 대부분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
- 캐나다 어디서든 살며, 일하고, 공부할 권리
- 시민권을 신청할 권리 및
- 캐나다 법과 헌장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 및
- 모든 법 존중

영주권자는 다음을 할 수 없습니다.

- 투표 또는 공직 출마
- 특정 직업 보유 또는
- 입국 불허자가 되어 캐나다에서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 캐나다 체류

영주권 카드

2002년,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CIC)는 영주 자격 증명으로 영주권 카드(Permanent Resident card)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드는 “PR 카드”라고도 하며, 종이로 된 “영주 입국 기록”(Record of Landing) 문서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2007년 12월 현재, 대부분 영주권자는 상업용 교통편(예: 항공기, 버스, 선박)으로 캐나다에 재입국하거나 자동차로 국경을 넘는 경우 반드시 이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카드는 캐나다에서만 발급되므로 영주권자는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카드가 없으면 캐나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가서 캐나다 재입국용 임시 여행 서류를 받으면 됩니다.

영주권자는 PR 카드를 만료일 전에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신분 증명 서류가 없어 새 카드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002년 6월 전에 캐나다에 온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카드가 원래 영주 입국 서류를 대신합니다.

PR 카드에 관한 사항은 1-800-255-4541(캐나다에서만)로 문의하시거나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cic.gc.ca/english/information/pr-card

거주 의무

영주권자는 반드시 거주 의무를 충족하여야 영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매 5년 중 2년간 이 의무를 반드시 다하여야 합니다. 이는 어느 5년 기간 중 최소한 2년(730일)은 반드시 캐나다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속 2년이 아니어도 됩니다.

5년 이상 영주권자였다면 최근 5년만 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해외에 살면 거주 의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 캐나다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
- 캐나다 부모의 동반 자녀인 경우
- 캐나다 사업체나 캐나다 정부 기관에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
-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를 동반하고 또한 캐나다 사업체나 캐나다 정부 기관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 또는

- 영주권자인 부모의 자녀이고 **또한** 캐나다 사업체나 캐나다 정부 기관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

조건부 영주권 또는 영주권 상실

초청 이민 배우자의 2년 조건부 영주권

2012년 10월 25일 이후 영주권 신청을 한 초청 이민 배우자는 조건부 영주권 대상입니다. 이 같은 조건부 영주권은 다음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 이민 초청자와의 관계가 2년 이하인 배우자나 **사실혼** 또는 **부부** 파트너
- 이민 초청 후원 약정 신청서 제출 당시 이민 초청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없는** 커플

초청 이민 배우자는 캐나다에서 영주 자격을 받는 날로부터 2년간 이민 초청자와 실제 관계로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해당 관계를 지속하지 않는 경우, 초청 이민 배우자의 영주 자격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2년 요건 이외에는 초청 이민 영주권자와 일반 영주권자는 다른 점이 없습니다. 초청 이민 배우자는 다른 영주권자와 똑같은 권리가 있고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취업 또는 유학 허가 없이 일하고 공부할 수 있으며, 대학 수업료에 차등이 없고, 사회 보장을 비롯한 의료와 복지 혜택을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지면 이민 초청자는 3년 약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계 파탄의 원인과 관계없이 재정적 책임을 집니다.

2년 조건부 영주권의 예외

이민 초청자의 사망에 의한 예외

- 이민 초청자가 2년 조건부 기간 중 사망하고, 초청 이민 배우자는 이민 초청자가 사망할 때까지 실제적인 동거 관계를 유지했다면,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CIC는 증거와 함께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변호사나 법적 대변자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청 이민자의 학대 또는 방임에 의한 예외

- 조건부 영주권은 이민 초청자의 학대 또는 방임이 있거나 이민 초청자와 관계가 있는 자가 학대 또는 방임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초청 이민자가 2년 조건부 기간 중 한집에 살든 아니든 관계없습니다.**
 - 학대는 신체적 학대, 강제 감금, 성학대, 동의 없는 성적 접촉, 심리적 학대, 위협과 협박 또는 사기와 갈취를 비롯한 재정적 학대일 수 있습니다.
 - 방임은 식품이나 의복, 의료, 주거 같은 생활 필수물 제공 불이행과 심각한 손상 위험에 처하게 하는 기타 태만일 수 있습니다.

학대나 방임을 당하고 있다면 즉시 도움을 받으십시오. 안전한 거처에 정착하면 증거와 함께 CIC에 알려야 합니다. 변호사나 법적 대변자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9-1-1에 연락하십시오.

임시 거처나 여성 쉼터, 법적 대변자를 찾으려면
피해자링크(VictimLINK)에 무료 전화 1-800-563-0808로
연락하십시오.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거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영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인은 영주 자격을 즉시 잃지 않으며, 이민 이의 신청부(Immigration Appeal Division)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법적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는 CIC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60일 안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도 CIC는 인도주의와 온정주의에 의한 배려 차원에서 영주 자격 유지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입국 불허

영주권자는 입국 불허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영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다음 이유로 입국 불허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보 문제
- 인권 위반
- 범죄 행위
- 조직범죄
- 재정적 이유 또는
- 허위 진술

범죄 행위

영주권자는 캐나다 안이나 밖에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입국 불허자가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행동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활동의 패턴”으로 정의되는 조직범죄에 연루되었으면 입국 불허자가 됩니다. 인신 밀수, 인신매매, 돈세탁 등은 이에 해당합니다.

허위 진술

영주권자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CIC에 거짓말을 하면 입국 불허자가 됩니다.

이민 초청자가 허위 진술을 하면, 초청 이민 가족도 입국 불허자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입국 불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cic.gc.ca/english/information/inadmissibility/who.asp

자신이 입국 불허자로 여겨질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보호

난민은 두 종류인데 내국 난민과 해외 난민입니다. 해외 난민은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국외에서 선정하여 후원합니다. 이들은 *난민 인도주의 재정착 프로그램(Refugee and Humanitarian Resettlement Program)* 범주에 듭니다. 재정착 난민 대다수가 캐나다에 영주권을 받아 오거나 일부 경우 임시 거주자



허가를 받아 옵니다. 그러나 일부 난민은 스스로 캐나다에 와서 국경이나 공항, 출입국 사무소에서 망명을 요청합니다. 이런 난민은 난민 지위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해외 난민

난민 인도주의 재정착 프로그램

CIC는 전 세계 난민 수용소에서 난민을 선별하여 캐나다로 이주시킵니다. 재정착은 난민을 캐나다로 데려와 영주권자로 살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CIC는 국제 연합 난민 고등 판무관(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과 기타 소개 기관 및 민간 후원 단체에 의지하여 캐나다 재정착 대상 난민을 선별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속한 난민은 의료, 안보, 범죄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부분 경우 영주권자로 도착합니다.

해외 난민이 일부 의료 선별 검사를 마치지 않은 채 긴급히 재정착할 필요가 있으면 임시 거주자 허가를 받아 캐나다에 도착하는데, 이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때까지 반드시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하는 지위입니다.

세 부류의 해외 난민이 있습니다.

- **해외 협약 난민(Convention Refugees Abroad) 부류:** 고국(또는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국가)을 떠나 있고 인종이나 종교, 정견,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일원(예: 성적 성향이 다른 여성 또는 사람)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근거 있는 우려가 있어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
- **비호국(Country of Asylum) 부류:** 난민과 같은 상황에 있지만, 협약 난민 자격이 없으며, 모국(또는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국가)을 떠나 있고, 인권 갈등이나 인권 위반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타당한 시간 안에 그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고, 장차 개인 후원을 받거나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사람
- **발생국(Source Country) 부류:** 통상적인 거주국이 CIC가 난민 발생국으로 분류하는 나라이고 현재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cic.gc.ca/english/refugees/outside/index.asp

정부 지원 난민(Government-assisted refugees, GAR) 프로그램

정부 지원 난민은 해외 협약 난민입니다. 캐나다 재정착은 캐나다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하거나 CIC가 지원하는 비정부 기관의 도움으로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대개 도착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계속됩니다.

긴급 보호 프로그램(Urgent Protection Program, UPP)

UPP는 캐나다 정부가 본국 송환 위협이나 직접적인 생명 위협에 직면한 난민의 긴급 요청에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1988년 캐나다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난민 여성들을 위하여 **위험에 처한 여성 프로그램(Women at Risk Program)**을 창설했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자신을 돕거나 보호해줄 가족 또는 친구가 없고 강간이나 기타 폭력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GAR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www.cic.gc.ca/english/refugees/outside/resettle-gov.asp

해외 난민 후원

단체와 개인은 해외에 살며 캐나다 재정착을 원하는 난민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CIC는 난민 후원에 관심이 있는 단체에 난민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후원자는 반드시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미 캐나다에 있는 난민 신청자는 이런 종류의 후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후원 단체는 난민을 반드시 1년간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런 지원에는 의, 식, 주거 포함됩니다. 특별한 경우 후원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난민 후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www.cic.gc.ca/english/refugees/sponsor/index.asp

내국 난민

보호 대상자

보호 대상자(protected person)는 보호 필요자(Person in Need of Protection)이거나 협약 난민입니다. 모든 보호 대상자는 캐나다에서 난민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 필요자

보호 필요자는 본국에 돌아가는 경우 위험(고문, 생명 위협 또는 잔인하고 유별난 대우나 형벌을 받을 위험)에 직면할 사람을 말합니다.

협약 난민

협약 난민은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상 난민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캐나다의 이민 난민 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은 협약 난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인종이나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일원, 정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 (a) 각 국적국을 떠나 있으며, 동일한 우려를 이유로 그러한 각국의 보호를 꺼려하는 자 또는
 - (b) 국적국 없이 자신의 통상적인 이전 주거가 있는 나라 밖에 있으며, 동일한 우려를 이유로 그 나라로 돌아가기를 꺼려하는 자

캐나다에서 협약 난민 지위나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을 **난민 신청자**라고 합니다.

난민 신청자

대부분 난민은 스스로 캐나다에 와 국경이나 공항, CIC 사무소에서 난민 보호 신청을 합니다. 이런 난민은 도착 시 아무런 체류 자격이 없으므로 반드시 난민 지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난민 신청자는 신청 절차 중 자비로 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쓸 형편이 안 되는 난민 신청자에게는 제한된 법률 구조 보조금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BC 주 법률 구조에 관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legalaid.bc.ca/legal_aid/immigrationProblems.php

**이민 문제에 대한 소개 서비스 또는 법률 구조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 구조 이민 안내
전화 604-601-6076이나 무료 전화 1-888-601-6076으로 문의하십시오.**

주소 변경

거주지를 바꾸는 신청자는 새 주소를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IRB)와 CIC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주소 변경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두 기관 중 어느 곳에서든 보내는 중요한 서신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신청 포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번호(SIN)

난민 신청자는 SI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홉자리 숫자의 정부 프로그램용 개인 식별 번호로 캐나다에서 일하는 데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종업원에게 SIN 카드를 보여달라고 하여야 합니다. SIN을 받으려는 난민 신청자는 반드시 취업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9"로 시작하는 SIN 번호가 주어집니다. 모든 900 시리즈 SIN 카드에는 소지자의 이민 서류 만료일과 일치하는 만료일이 있습니다.

취업 허가

난민 신청자는 고용 제안이 필요 없는 자유 취업 허가(open work permit)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자유 취업 허가는 취업이 특정 직업이나 고용주로 제한되지 않는 허가증입니다.

난민 신청이 IRB 난민 보호부로 회부됐고 신체 검사가 완료됐으면 대부분 난민 신청자는 CIC에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 신청자가 지정 출신국 출신이라면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또는 난민 신청이 IRB로 회부된 후 180일이 지날 때까지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출국 명령을 받았지만,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이 그 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는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영어반

보통은 학생 허가증이 있어야 영어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약 난민과 보호 필요자는 성인을 위한 영어 서비스(English Language Services for Adults, ELSA)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부가 후원하는 ESL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elsanet.org/index.html.

난민 신청자는 ELSA 수업 수강 자격이 **없습니다**. 난민 봉사 기관에서는 난민 신청자들에게 무료 ESL 수업을 제공하거나 거주지의 무료 또는 저렴한 ESL 수업을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임시 거주자

임시 거주자는 방문, 취업, 학업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캐나다에 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비자와 허가

비자(visa)와 허가(permit)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비자는 외국인의 캐나다 입국을 허용하는 것인 반면 허가는 외국인이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 특정 활동, 특히 취업이나 학업 등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비자가 있어야 캐나다에 올 수 있고(일부 국가는 비자 면제), 유학 허가(study permit)가 있어야 캐나다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자가 유학 허가 없이 캐나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예외도 일부 있습니다.

방문 비자

일반적으로, 방문자는 캐나다에서 떠날 때까지 만료되지 않는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 면제국 출신이 아닌 한 반드시 비자를 신청하여야 캐나다에 올 수 있습니다(www.cic.gc.ca/ENGLISH/visit/visas.asp).

캐나다는 방문자의 병원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방문자가 여행 보험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캐나다에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방문자는 임시 거주 자격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캐나다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 방문자로 와서 방문 비자를 취업 허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캐나다 밖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취업 허가

캐나다에서 임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비자 신청과 더불어(비자 면제국 출신이 아닌 경우) 취업 비자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 비자가 있어야 하며, 임시 거주 자격이 만료되면 캐나다에서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대부분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주의 고용 제안(job offer)이 있어야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 허가를 반드시 캐나다 밖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취업 허가 연장은 대개 (원래 허가가 만료되기 전이라면) 캐나다 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허가

외국인 학생은 6개월 이상 공부하려면 학생 허가(student permit)가 있어야 합니다.

유효한 학생 허가가 있는 학생은 다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대학 캠퍼스에서 일하기 그리고
- 캐나다에서 계속 공부하고자 하면 캐나다 안에서 학생 허가 갱신 신청

캐나다에서 공부할 자격을 받으려는 학생 허가 신청자는 반드시

- 캐나다의 학교, 단과 대학, 종합 대학 또는 기타 교육 기관 입학이 허락됐어야 합니다.
- 수업료, 생활비, 귀국 교통비 등을 부담할 만한 돈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전과가 없는 준법 시민이어야 하며, 캐나다 안보에 위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건강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기꺼이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 이민관에게 학업을 마치면 캐나다를 떠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영구 체류

캐나다에 임시 거주자로 와서 자격을 영주권자로 자동 변경하는 것은 대개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경우, 영주권은 반드시 캐나다 밖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계속 공부하거나 일하면서 해외 비자 사무소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유자격 임시 거주자는 **캐나다 경력 이민 클래스(Canadian Experience Class)**로 캐나다 안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이민 클래스는 캐나다 학력과 근무 경력이 있는 특정 숙련 임시 근로자와 국제 학생을 대상으로 2008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캐나다 경력 이민 클래스(CEC)

외국인 국제 학생과 외국인 임시 근로자는 이제 캐나다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cic.gc.ca/english/immigrate/cec/index.asp

입주 돌보미

입주 돌보미(live-in caregiver)는 돌봄을 받는 사람의 집(즉, 고용주의 집)에서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임시 취업 허가를 받아야 캐나다에서 입주 돌보미로 일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2년간 일한 후, 입주 돌보미는 캐나다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입주 돌보미를 위한 법률 상담, 권익 대변, 정보 등은
웨스트 코스트 가사 도우미 협회(West Coast Domestic
Workers' Association)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604-
669-4482로 연락하거나 www.wcdwa.ca를 보십시오.

임시 취업 허가를 받으려는 입주 돌보미는 반드시 다음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또는 그에 상당하는 학력)
- 관련 분야에서 6개월 이상 훈련 또는 1년 이상 유급 근무 경력
- 영어나 프랑스어를 충분히 말하고, 읽고, 이해하여 혼자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음
- 반드시 미래의 고용주와 맺은 고용 계약이 있어야 함 그리고
- 캐나다 입국 전 취업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함

입주 돌보미 프로그램에 관하여 CIC가 제공하는 자세한 정보 웹사이트:
www.cic.gc.ca/english/work/caregiver/index.asp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인신매매 피해자는 가까운 CIC 사무소를 방문하십시오. 당장 도움이 필요하면 경찰에 연락하십시오.

인신매매 피해자는 상황에 따라 갱신 가능한 180일 임시 거주자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누군가 착취되고 있다는 정보나 의혹이 있으면 인신매매 투쟁 사무소(Office to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OCTIP)에 1-888-712-7974로 연락하십시오. 이 전화는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으며, 통역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trp.asp

교육

공립 학교(유치원~12학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법에 따르면, BC 주에 사는 만 5~16세의 모든 어린이는 반드시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어린이가 BC 주의 “보통 주민”이라면, 주 정부는 이 어린이에게 공립 학교의 한 자리를 반드시 무료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경우 무료 교육을 제공합니다.



- 어린이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다.
- 어린이가 난민 신청자 또는 협약 난민이다.
- 어린이의 부모가 캐나다에 영주 입국했거나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신청했고 CIC 서류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또는
- 어린이의 부모가 캐나다에 1년 이상 임시 거주자로 입국했고 CIC로부터 학생 허가나 취업 허가를 받았다.

**BC 주 공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부 웹사이트에서
“Education”(교육)을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www2.gov.bc.ca/**

BC 주 공교육 과정은 학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모는 반드시 거주 학군에 있는 학교에 자녀를 등록하고 해당 교육청에 다음 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부모와 자녀의 이민 또는 시민권 서류
- 자녀의 생년월일과 부모의 이름이 나와 있는 출생 증명서나 호적 등본, 가족 관계 증명서, 기타 서류
- 해당 학군 거주 증명(임대차 계약서, 리스 계약서, 구매 계약서, 재산세 고지서 등)

- 예방 접종 기록 및
- 이전 성적표 또는 생활 기록부

이 중 어느 서류든 영어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공인 번역이 필요합니다. 등록 절차와 시한은 학군마다 다릅니다(거주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거주 학군이 어디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www.bced.gov.bc.ca/apps/imcl/imclWeb/Home.do

자녀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부모는 자녀의 출결 상황, 학업 성적, 행동을 알아볼 뿐 아니라 그 학교의 학부모 자문 위원회에 참여할 자격도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학교의 교육 및 기능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관하여 교장과 직원에게 조언을 합니다.

BC 학생 보조(StudentAid BC)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BC 주 정부는 용자를 제공하여 수업료 마련을 돕습니다. 다음을 비롯하여 신청인이 용자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협약 난민 또는 보호 대상자
- BC 주 거주자 그리고
- BC 학생 보조에서 인정하는 교육 기관에 학생으로 등록

학생 용자 자격은 대학 소재지가 아닌 신청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BC 주나 캐나다 밖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BC 거주자도 여전히 BC 주에서 용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학생 용자 거주 요건은 신청인이 부양가족으로 여겨지는지 아니면 독립한 학생으로 여겨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독립한 학생으로 간주합니다.

- 기혼자, 별거자, 이혼자 또는 사별자이다.
- 12개월간 결혼 생활과 같은 관계로 동거해왔다.
- 부모이다.
- 고등학교를 중퇴한지 4년이 됐다.

- 12개월간 따로 2회 풀타임으로 일했다. 또는
-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의절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BC 주가 최근 12개월 연속(풀타임 대학생으로 지낸 시간 제외) 거주한 주라면 독립한 학생은 거주 요건을 충족합니다. 어느 주에서든 12개월간 살지 않은 학생은 용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BC 주에서 살고 있어야 자격이 있습니다.

독립한 학생의 요건에 맞지 않는 학생은 부모 또는 후원자가 BC 주에서 최근 12개월간 연속 거주했다면 독립한 학생이자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캐나다에서 사는 부모나 후원자가 없는 학생도 거주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BC 주에서 학생 용자를 신청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studentaidbc.ca/

세금

거주 요건

캐나다에서 소득을 버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과세 대상 소득과 세율에 관한 규칙은 해당인의 캐나다 거주자 인정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되지만, 비거주자는 캐나다에서 번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이 같은 거주 요건은 조세 제도 고유의 특징이며 다른 정부 프로그램의 이민 수속 또는 거주 요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법률 조항은 *캐나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 of Canada)*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주자는 두 종류로, *실제* 거주자와 *간주* 거주자입니다. 캐나다 법원들이 지지한 내용은 “캐나다에 정착된 일상 생활에서 정기적으로, 대개 또는 습관적으로 사는 곳”인 경우 해당인은 *실제* 거주자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은 거주 연고 관계를 알아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의 소유나 임차 여부 또는 캐나다에 사는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 자녀 유무 여부입니다. 이런 조건이 존재하지 않아도 이차적인 거주 연고 관계가 충분히 있는 사람은 여전히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이차적인 거주 연고 관계는 거주자로 인정되기에 거의 충분하지 않지만, 몇 가지가 합쳐지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차적인 거주 연고 관계에 해당하는 조건은

- 캐나다 내 개인 재산(가구, 자동차 등)
- 캐나다 내 사회적 연고 관계(캐나다 단체의 회원)
- 캐나다와의 경제적 관계(취업, 캐나다 은행 계좌, 은퇴 저축 플랜, 신용 카드 등)
- 영주 자격 또는 취업 허가
- 주 또는 준주의 의료 보험
- 주 또는 준주에 등록된 차량
- 주 또는 준주의 운전면허

- 계절 주거지 또는 리스한 주거지
- 캐나다 여권 또는
- 캐나다 노조 또는 직업 단체 회원 자격 등의 유무 여부입니다.

이 같은 거주 연고 관계는 캐나다 조세 제도의 목적상 거주자 인정 시점과 중단 시점을 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거주자가 되려면 거주 연고 관계가 반드시 확립되어야 하며, 비거주자가 되려면 중요한 모든 거주 연고 관계가 반드시 단절되어야 합니다.

실제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및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 목적상 여전히 거주자로 간주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거주자와 간주 거주자의 주된 차이는 간주 거주자의 경우 캐나다 어느 주의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 정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간주 거주자는 주 정부 소득세보다 많거나 적을 수도 있는 연방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주 정부 세금 공제 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인이 거주 연고 관계를 확립하지 않아도 연간 183일 이상 캐나다에 머물면 그 해 전체에 대하여 거주자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로서 캐나다 군대나 연방 또는 주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거나(근무 시작 전 거주자였던 경우) 캐나다 국제 개발청(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의 국제 개발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사람은(근무 시작 전 거주자였던 경우) 간주 거주자로 인정되며, 부양가족 자녀도 간주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마지막 유형의 간주 거주자는 조세 조약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이 캐나다 거주자라는 이유로 거주 국가로부터 상당한 세금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극소수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실제 거주자 또는 간주 거주자로 인정됐을 사람은 비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와 타국 모두의 거주자로 인정되고 캐나다와 해당 국가가 조세 조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인이 조세 조약에 따라 타국의 거주자라면 캐나다 비거주자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에 대한 거주자 결정 신청 및 세금 목적상 거주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cra-arc.gc.ca/tx/nrrsdnts/cmmn/rsdncy-eng.html

비과세 양육 보조금

캐나다 비과세 양육 보조금(Canada Child Tax Benefit, CCTB)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에 전국 조세 제도를 통하여 지급되는 월정액입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드시 만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 해당인은 반드시 자녀의 보호를 주로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세금 목적상 반드시 캐나다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 해당인 및 함께 사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는 둘 다 반드시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협약 난민, 보호 대상자이거나 이전 18개월간 캐나다에서 살았고 최소한 거주 19번째 달에 유효한 허가를 소지한 임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주: CCTB 급부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고 있는 사람은(예: 요구되는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정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둘 다 자녀와 함께 산다면, 대개는 어머니가 주된 보호자로 인정되므로 어머니가 CCTB 신청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주된 보호자이고 신청을 원한다면, 그런 사실을 어머니가 명시한 메모가 있어야 합니다.

CCTB를 받으려면, **신청인은 물론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도** 반드시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매년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월간 CCTB 지급액은 다음 요인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가계 소득
- 적격 자녀 수
- 거주하는 주 및
- 해당 자녀의 장애 급여 수혜 자격

보편적 육아 보조금

보편적 육아 보조금(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은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제공됩니다. 자녀당 월 \$100를 지급하여 육아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CCTB 신청자는 UCCB 대상으로 자동으로 간주합니다(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와 가족의 세금 혜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캐나다 비과세 양육 보조금(CCTB) 신청 양식은
국세청의 다음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www.cra-arc.gc.ca/bnfts/menu-eng.html

CCTB와 UCCB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www.cra-arc.gc.ca/E/pub/tg/t4114/t4114-e.html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

별거와 이혼으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재정적 권리와 의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두 부모는 자녀 양육에 재정적 책임이 있습니다. 별거 후 자녀가 대부분 한 부모와 살면 다른 부모는 자녀 양육비를 내어 양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는 자녀의 학교 비용, 식품비, 의복비 같은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입니다.

자녀 양육비

부모는 자녀를 돌볼 법적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재정적 지원이 포함됩니다.

부모 구실을 하게 된 사람(예: 계부모)도 자녀 양육비 부담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별거하면 한 부모는 자녀가 주로 같이 사는 다른 부모에게 돈을 주어야 합니다. 이 돈으로 자녀의 일상적 필요를 충당하는데, 이를 **자녀 양육비(child support)** 또는 **생활 유지비(maintenance)**라고 합니다.

다른 부모가 단지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늦게 준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연방 자녀 양육비 지침(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s)과 도표(Tables)는 결혼한 부부와 사실혼 커플을 포함하여 별거한 모든 부모에게 적용됩니다. 이 지침과 도표에는 한 부모가 자신의 연간 총소득을 토대로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는 통상적인 자녀 양육비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부모가 양육권을 공유한 상태이고 자녀가 다른 한 부모와 40% 이상 시간을 함께 보내면 자녀 양육비 금액은 통상적인 금액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감소를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요인으로는 양육비 부담 부모의 재정적 곤경, 면접 교섭 방문비 상승, 다른 자녀나 장애가 있는 친척 부양 의무 등이 있습니다.

자격

자녀 양육비는 부모가 아닌 자녀의 권리입니다.

BC 주의 만 19세 미만 어린이는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들이 만 19세가 되어도 질병이나 장애, 기타 이유(예: 단과 대학이나 종합 대학 같은 고등 교육 기관의 풀타임 학생)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여전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부모(계부모)

계부모는 **법적 부모**로 간주할 수도 있으며, 별거 후 자녀 양육비 부담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부모는 자녀의 친부 또는 친모와 함께 살며 최소한 1년간 자녀 양육비 부담을 도운 사람입니다. 결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파트너는 법적 부모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계부모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고 싶은 부모는 반드시 신속히 행동하여야 합니다. 계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마지막으로 부담한 날로부터 반드시 **1년 안에**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계부모가 자녀 양육비 부담 명령을 받으면, 금액은 연방 자녀 양육비 지침의 통상적인 금액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지침

연방 자녀 양육비 지침과 도표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가족들이 같은 금액의 자녀 양육비를 내고 받도록 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입니다. 연방 자녀 양육비 지침은 양육비를 부담하는 부모가 버는 소득과 양육비가 필요한 자녀의 수를 고려합니다. 자녀 양육비를 스스로 정하고자 하는 부모는 이 지침과 도표를 참조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부모가 해당 자녀와 40% 미만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 부담하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연방 자녀 양육비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 지침은 다음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www.justice.gc.ca/eng/rp-pr/fl-lf/child-enfant/guide

집행

한 부모가 다른 부모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명시한 법원 명령을 받았거나 그런 내용의 별거 합의서를 제출했다면 그 부모는 가족 생활 유지비 강제 집행 프로그램(Family Maintenance Enforcement Program, FMEP)을 통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FMEP는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 명령 및 별거 합의서에 따라 돈을 받게 하는 주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양육비 또는 부양비 명령이 있거나 합의서를 제출한 BC 주 거주자는 누구나 FMEP에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 또는 합의서 등록 방법 등 FMEP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fmep.gov.bc.ca

FMEP 안내 전화(InfoLine)

광역 밴쿠버: 604-775-0796

광역 빅토리아: 250-356-5995

BC 주 내 기타 지역: 1-800-668-3637

특별 비용

연방 자녀 양육비 지침에 따라, 기본 자녀 양육비 이외에도 지급이 필요한 기타 특별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는 보육비, 사립 학교 비용,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 활동, 의료비, 치과 진료비, 대학 또는 기타 고등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각 부모의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합니다. 이 상황에서 각 부모의 소득을 계산하려면, 배우자 부양비를 받는 부모의 소득에는 그 금액을 넣고 이를 부담하는 부모의 소득에서는 뺍니다.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및 웰페어

웰페어를 받고 자녀 양육비 및/또는 배우자 부양비를 받거나 그에 대한 법적 청구권이 있는 부모에게 적용되는 정부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는 사회 개발 사회 혁신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Social Innovation)(이하 “MSDSI”)에 자녀 양육비 및 배우자 부양비 문제에 관한 법적 조치 권리를 양도하는 양식에 반드시 서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관할 부서에 대한 “권한 양도”라고 합니다. 이는 MSDSI가 법원에 가서 자녀 양육비 또는 배우자 부양비 명령을 받아내거나 명령을 변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MSDSI는 필요한 경우 다른 부모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방법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부모 사이의 관계가 학대적이었다면 이를 MSDSI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MSDSI가 자녀 양육비 또는 배우자 부양비 건으로 다른 부모에게 접촉하면 한 부모가 위험해진다는 데 동의하면 MSDSI는 접촉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 지급액은 웰페어를 신청하거나 받는 부모에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양육비든 부양비든 받게 되면 웰페어 수표 금액에서 공제된다는 뜻입니다.

소득세 규칙

자녀 양육비 지급액은 그것을 내는 부모에게 소득세 공제 대상이 아니며, 그것을 받는 부모에게는 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습니다¹.

¹소득세와 자녀 양육비 관련 규칙은 1997년 5월 1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녀 양육비 명령이 1997년 5월 1일 전에 내려졌으면 지급액은 그것을 내는 부모에게 세금 공제 대상이고, 받는 부모에게는 소득으로 신고됩니다.

아래 국세청(CRA) 웹사이트에는 자녀 양육비 지급과
세금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www.cra-arc.gc.ca/supportpayments

배우자 부양비

배우자 부양비(spousal support)는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기본 생활비 충당에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 부양비도 때로 *생활 유지비(maintenance)* 또는 *별거 부양비(alimony)*로 불립니다. 배우자 부양비는 대개 매월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BC 주 *가족법(Family Law Act)*과 *연방 이혼법(Divorce Act)*은 모두 법원이 한 배우자에게 다른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배우자의 이민 초청으로 온 배우자는 변호사, 조정자 및/또는 판사에게 초청 이민 후원 계약 또는 약정이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배우자 부양비는 다음 사람들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 a. 현재 또는 과거에 결혼했거나
- b. 최소한 2년간 함께 살았거나
- c. 함께 산 기간이 2년 미만이지만, 둘 사이에 자녀가 있는 자

이는 이성 관계와 동성 관계에 모두 적용됩니다. 법원에 배우자 부양비 명령을 신청하는 데는 시한이 있습니다. 결혼한 배우자는 반드시 이혼 또는 **혼인 무효** 이후 **2년** 안에 배우자 부양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년 이상 함께 살았거나 2년 미만 함께 산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배우자들은 반드시 별거일로부터 2년 안에 배우자 부양비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모든 배우자가 다 배우자 부양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배우자 모두

별거 후 자력으로 살아갈 노력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비 명령이 1~2년간 내려져서 그동안 한 배우자가 학교에 다시 다니거나, 재훈련을 받거나, 달리 자신의 기술을 향상하여 자력으로 살 수 있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직장을 떠난 지 오래됐거나 장애가 있어 자력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배우자 부양비가 무기한 계속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비 권장 지침이 있어 한 배우자에게 배우자 부양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면 배우자 부양비 지급액 및 기간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사 사건 국선 변호사(family duty counsel)나 변호사와 상의하여 배우자 부양비 지침에 관하여 더 알아보아야 합니다.

커플은 배우자 부양비를 두 사람 사이에 또는 조정자의 도움으로 합의하거나 판사가 결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각 경우에 조건을 합의서나 명령에 기록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단 제출되면, 합의서는 FMEP에 등록되어 강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비 문제로 결정을 내릴 때 판사는 여러 요인을 봅니다. 그러나 한 배우자의 행동이 명령된 부양비의 금액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관계 파탄의 이유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배우자 부양비의 금액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판사는 배우자 부양비 지침을 이용하여 부양비 금액을 결정합니다.

배우자 부양비 명령은 전 배우자가 지급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규칙

배우자 부양비를 부담하는 사람은 같은 금액을 소득세 목적상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양비를 받는 사람은 그 금액을 반드시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급해야 하는 모든 자녀 양육비는 배우자 부양비로 지급된 금액이 공제로 청구될 수 있기 전에 **반드시**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국세청 양육비/부양비 지급금 안내
www.cra-arc.gc.ca/supportpayments

명령 또는 합의서 변경

별거 중인 배우자들은 상황이 바뀌면(예: 배우자 부양비 수령자가 부양비를 더는 필요해 하지 않음) 별거 합의서 또는 법원 명령을 변경해야 하거나 변경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 변경

별거 중인 배우자들이 변경 내용을 서로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 내용을 명시한 새 합의서에 서명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합의하지 못하면, 반드시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합의서 변경을 요구하고 명령을 내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법원 명령 변경

별거 문제를 법원에서 결정하거나 합의서를 동의 명령에 명시한 두 사람은 반드시 법원에 다시 가서 명령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법원 명령 변경은 명령 **수정(varying)**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양육권이나 면접 교섭권, 양육비 또는 부양비에 관한 명령을 수정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에게 반드시 증명하여야 합니다. 타당한 이유의 예로는 한 부모의 소득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부양비 명령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명령 수정 또는 확대 신청은 반드시 명령 만료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산 분할

재산 분할에 관한 법원 명령은 판사가 거의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 합의는 한 당사자에게 불공정한 경우에 한하여 판사가 변경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독립적인 법률 상담을 통하여 원래 합의에 이른 것이었다면 판사는 대개 변경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 명령이나 합의를 변경하고자 하면 변호사를 만나 법률 상담을 하십시오.

가족법 문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familylaw.lss.bc.ca

BC 주의 새로운 가족법 안내서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resources.lss.bc.ca/pdfs/pubs/Guide-to-the-New-BC-Family-Law-Act-eng.pdf

법률 서비스 협회(Legal Service Society) 변호사 가족 상담 전화(Family Telephone Advice Lawyers) – 가족법 변호사가 “다음 단계”를 전화로 간략히 조언합니다.
전화: 604-408-2172 또는 무료 전화(BC 주 내): 1-866-577- 2525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BC 시민 자유 협회(BC Civil Liberties Association)

정부나 고용주, 기타 단체의 시민 자유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550-1188 West Georgia Street
Vancouver, B.C. V6E 4A2
전화: 604-687-2919
www.bccla.org



BC 노인 옹호 지원 센터(BC Centre for Elder Advocacy and Support)

저소득과 기타 장벽으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법적 대변 프로그램(Legal Advocacy Program)과 노인 법률 상담소(Elder Law Clinic). 노인 학대 정보 전화(Seniors Abuse and Information Line)를 통하여 접수.

1199 West Pender Street
Vancouver, B.C. V6E 2R1
www.bcceas.ca

노인 학대 정보 전화
1-866-437-1940

BCCEAS 업무 전화
604-688-1927

BC 인권 연합회(BC Human Rights Coalition)

인권 정보, 교육, 훈련, 상담, 조사, 조정, 연구, 법적 대변 제공.

1202-510 West Hastings Street
Vancouver, B.C. V6B 1L8
로어 메인랜드: 604-689-8474
BC 주 내 기타 지역: 1-877-689-8474
www.bchrcoalition.org

BC 공익 옹호 센터(BC Public Interest Advocacy Centre, BCPIAC)

주요한 공적인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반영되는 집단의 이익을 증진하는 비영리 협회.

Suite 208-1090 West Pender Street
Vancouver, B.C. V6E 2N7
전화: 604-687-3063
www.bcpiac.com

고용 기준 관련 일반 문의

BC 주 내 무료 전화: 1-800-663-3316
www.labour.gov.bc.ca/esb/contact/welcome.htm

지역 사회 법률 지원 협회(Community Legal Assistance Society, CLAS)

판례가 되는 사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과 관련한 변호사들의 개혁을 구하는 단체. 티 이의 신청, WorkSafeBC 이의 신청, 웰페어 재판소 항소 사법 심사, 자선 단체 세법 처리,

Suite 300-1140 West Pender Street
Vancouver, B.C. V6E 4G1
전화: 604-685-3425
무료 전화: 1-888-685-6222
www.clasbc.net

이민자를 위한 법원 정보 프로그램(Court Information Program for Immigrants, CIPI)

사법 교육 협회(Justice Education Society)에서 피해자나 증인, 피고인, 민사 소송 당사자로 법원에 출두할 수도 있는 중국, 베트남, 남아시아 이민자와 난민에게 정보와 소개 서비스 제공

Vancouver Provincial Court
222 Main Street
Vancouver, B.C. V6A 2S8

중국어와 베트남어 담당자: 604-660-6087
남아시아 담당자: 604-760-5727
www.lces.ca/CIPI2

전화 법률 정보(Dial-a-Law)

캐나다 변호사 협회(Canadian Bar Association)가 BC 주 가족법 정보를 시민에게 전화로 전달하는 녹음 테이프 도서관. 테이프의 원고는 내려받아 인쇄 가능. 원고는 중국어와 전자브어로 제공.

로어 메인랜드: 604-687-4680
BC 주 내 기타 지역: 1-800-565-5297
www.dialalaw.org

사법 교육 협회(Justice Education Society)

주 전역 법원에서 오리엔테이션 및 캐나다 사법 제도 관련 정보 제공.

260-800 Hornby Street
Vancouver, B.C., V6Z 2C5
전화: 604-660-9870
팩스: 604-775-3470
www.JusticeEducation.ca

법대 학생 법률 상담 프로그램(Law Students Legal Advice Program, LSLAP)

UBC 법대생들이 운영하고 변호사들이 감독하는 무료 법률 상담소. 로어 메인랜드 전역의 다양한 장소에 있는 상담소에서 법적 도움 제공.

전화: 604-822-5791
www.lslap.bc.ca

변호사 소개 서비스(Lawyer Referral Service)

변호사 이름과 전화번호 제공. 변호사와 30분 예약. \$25+세금.

로어 메인랜드: 604-687-3221
BC 주 내 기타 지역: 1-800-663-1919
www.cbabc.org/Advocacy/Initiatives/Lawyer-Referral-Service

법률 서비스 협회(Legal Services Society, LSS) - 법률 구조(Legal Aid)

변호사를 고용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법률 구조 제공. 법률 구조는 의뢰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제한된 상황의 가족, 형사, 난민, 이민 등 법률 분야에서만 심각한 법적 문제에 한하여 제공. 또한, 법률 관련 소책자와 팸플릿 다수 제공 및 법률 정보 아웃리치 담당자 보유. BC 주 전역에 다수의 법률 구조 사무소 운영.

로어 메인랜드: 604-408-2172
BC 주 내 기타 지역: 1-866-577-2525
www.lss.bc.ca

MOSAIC 법적 옹호 프로그램(Legal Advocacy Program)

이민법, 고용 기준법, 빈곤법 분야의 저소득층 새 이주자(체류 자격 불문), 이민자, 난민에게 상담, 법적 대리, 소개 서비스 제공.

1720 Grant Street, 2nd floor
Vancouver, B.C. V5L 2Y7
전화: 604-254-9626; 팩스: 604-629-0061
www.mosaicbc.com

Multilingolegal.ca

9개 언어(한국어,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이란어, 펀자브어, 스페인어, 베트남어)로 제공되는 BC 주 대중 법률 교육 자료 수록. 간행물은 내려받기 가능.

www.multilingolegal.ca

시민 법률 학교(People's Law School)

무료 법률 강좌 제공, 법률 관련 소책자 작성. 서비스와 간행물을 여러 언어로 제공.

150-900 Howe Street
Vancouver, B.C. V6Z 2M4
전화: 604-331-5400
www.publiclegaled.bc.ca

PICS 농장 근로자 법적 옹호 프로그램(PICS Agricultural Workers' Legal Advocacy Program)

복수의 장벽이 있는 농장 근로자들을 돕고, 고용 보험(EI), 근로자 재해 보상 위원회(WCB), 노령 보장 연금(OAS), 소득 보장 보조금(GIS), 장애 관련 사건, 임금 체불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 처리에 도움을 주도록 마련된 프로그램.

205-12725 80th Avenue
Surrey, B.C. V3W 3A6
604-596-7722
www.pics.bc.ca

근로자 상담실(Workers' Advisor Office)

WorkSafeBC 보상 청구에 문제가 있는 근로자에게 도움 제공.

전화: 1-800-663-4261
www.labour.gov.bc.ca/wab

무료 법률 상담 협회(Access Pro Bono)

BC 주에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법 제도 이용 촉진.

전화: 604-482-3195
www.accessprobono.ca

빅토리아 법률 센터(Victoria Law Centre)(UVIC 법대생)

변호사를 고용할 형편이 안 되는 의뢰인에게 법률 상담, 지원, 대리 서비스 제공.

225-850 Burdett Ave.
Victoria, B.C. V8W 0C7
전화: 250-385-1221
www.thelawcentre.ca

웨스트 코스트 가사 도우미 협회(West Coast Domestic Workers Association)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일하는 입주 돌보미들에게 법적 대변, 지원, 상담 등의 형태로 무료로 법적 도움을 주는 비영리 협회

302-119 West Pender Street

Vancouver, B.C. V6B 1S5

전화: 604-669-4482

무료 전화: 1-888-669-4482

www.wcdwa.ca

지역 사회 기관

다음은 새 이민자를 위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내 서비스와 단체를 모두 수록한 명부가 아닙니다.

AMSSA, BC 주 정부 안내, 서비스 캐나다, 레드북, 피해자 정보의 전화, PovNet 등은 모두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단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BC 다문화회 서비스 기관 연합회(Affiliation of Multicultural Societies and Service Agencies of BC, AMSSA)

AMSSA는 BC 주 전역에서 다문화 프로그램과 이민 정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80여 단체의 연합회입니다. AMSSA는 거주지 정착 서비스 기관 소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로어 메인랜드: 604-718-2780

BC 주 내 기타 지역: 1-888-355-5560

www.amssa.org

매 맞는 여성 지원 서비스(Battered Women Support Services)

BWSS는 폭력을 당하여 법체계가 개입한 여성들에게 지원, 대변, 정보,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BWSS 법적 옹호 프로그램(Legal Advocacy Program)도 공적 부조와 아동 보호를 비롯한 법적 대변 서비스를 다른 시스템과 더불어 제공합니다. BWSS 법적 옹호자는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 신고 및 접수 전화: 604-687-1867

업무용 전화: 604-687-1868

TTY: 604-687-6732

www.bwss.org

서비스 BC(Service BC)

서비스 BC는 BC 주 정부 내 프로그램, 서비스, 담당자 찾기를 도울 수 있습니다.

로어 메인랜드: 604-660-2421
빅토리아: 250-387-6121
BC 주 내 기타 지역: 1-800-663-7867
TDD- 로어 메인랜드: 604-775-0303
TDD- BC 주 내 기타 지역: 1-800-661-8773
www.servicebc.gov.bc.ca

모자이크 다문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MOSAIC Multicultural Victim Assistance Program)

피해자 서비스 프로그램은 경찰/사법 제도의 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피해자들에게 다중언어적, 문화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모든 배경을 지닌 이민자, 난민, 새 이주자에게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법 관련 정보, 대변, 동행, 대중 교육. 담당자들은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고 정신적 외상에 대처하도록 도움으로써 **정서적 지원**을 합니다.

1720 Grant Street, 2nd floor
Vancouver, B.C. V5L 2Y7
전화: 604-254-9626; 팩스: 604-254-3932
www.mosaicbc.com

모자이크 폭력 방지 상담 프로그램(MOSAIC Stopping the Violence Counselling Program)

STV 상담 프로그램은 학대를 당한 여성들에게 개인 및 단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STV 프로그램은 신체적 및/또는 성적 폭력을 참고 견디는 여성들과 아동 학대를 비롯한 아동기 정신적 외상의 장기적 후유증에 대처하는 여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STV 상담원들은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외상성 폭력과 학대를 참고 견딘 여성들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훈련을 받아 다문화 공동체 안에서 여러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여성들과 함께 일합니다.

1720 Grant Street, 2nd floor
Vancouver, B.C. V5L 2Y7
전화: 604-254-9626; 팩스: 604-254-3932
www.mosaicbc.com

리치 지역 사회 보건 센터(REACH Community Health Centre)

다문화 가족 센터(Multicultural Family Centre, MFC)

(604) 254 6468
1145 Commercial Drive, Vancouver, BC V5L 3X3
일반 이메일: info@reachcentre.bc.ca
www.reachcentre.bc.ca

BC 211

로어 메인랜드 전역의 지역 사회, 사회 기관, 정부 기관, 서비스 온라인 안내

www.bc211.ca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

서비스 캐나다는 연방 정부 서비스와 정보 네트워크를 전달합니다.

www.servicecanada.gc.ca

밴쿠버 로어 메인랜드 다문화 가정 지원 서비스 협회(Vancouver Lower Mainl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s Society)

5000 Kingsway Plaza III
#306-4980 Kingsway, Burnaby
B.C. V5H 4K7
전화: 604-436-1025 팩스: 604-436-3267
www.vlmfss.ca

피해자링크 BC(VictimLink BC)

범죄 피해자에게 지역 사회 기관을 소개합니다.

무료 전화: 1-800-563-0808
TTY: 604-875-0885 또는 문자 604-836-6301
VictimLINK: www.victimlinkbc.ca

포브넷 대변 서비스(PovNet Advocacy Resources)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지역 사회 기반 대변자 종합 명부와 대변자, 지역 사회 단체,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합니다.

www.povnet.org